

한방 칼럼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 아토피란?

아토피 피부염에서 아토피(atopy)는 '이상한' 혹은 '부적절한' 이란 의미로, 음식물 혹은 흡입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가려움을 동반하는, 만성재발성 습진 질환으로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병변과 분포와 양상으로 구분되는 피부질환을 말한다.

■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유아기에는 얼굴이나 사지의 바깥쪽에 습진이 관찰되나, 성장하면서 팔이나 다리, 목과 같이 접히는 부위에 습진의 형태로 관찰된다. 피부염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심한 가려움으로 인해 상처와 진물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색소침착이 생긴다. 가려움증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지며, 피부염 부위의 발열, 발적, 동통, 부종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 보조증상

1. 피부가 건조하다.
2. 얼룩덜룩하다.
3. 귀 주변이 찢어지고 갈라진다.
4. 눈 주위가 빨갛거나 가렵고, 피부가 어둡다.
5. 입술이 트고 잘 갈라진다.
6. 두피에 마른 비듬이 있다.
7. 땀이 나면 피부가 가렵고 긁게 된다.

8. 식사 후 열이 오른다.
9.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열이 오른다.
10. 주기적으로 열이 오른다.
11. 땀이 잘 나지 않는다.
12. 대변 양상이 불규칙하거나 변비 혹은 뱀새가 지독하다.
13. 식탐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편이다.

■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 원인

'세포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열과 독소의 과잉'에 있다. 유전,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에서는 많은 열과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인체는 상열화한, 내한외열과 같은 열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인체의 체온 조절력 또는 체온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인체 열의 불균형은 심폐 기능 이상, 간, 대장 해독 기능 저하, 면역 불안정, 피부의 열사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아큐베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취업이민 신청 시 고려사항들

1. 스폰서의 자격 요건

1) 일반 사업체
이민국의 스폰서에 대한 심사 기준은 스폰서의 급여를 지불 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우선 사업체가 작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상으로 스폰서 자신의 생활비를 빼고 신청자에게 연봉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법인(Corporation)인 경우는 회사 세금보고서상으로 1년의 순이익이 신청자의 연봉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인이 현재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노동부가 산정한 만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불 능력 조건이 충족됩니다.

2) 교회가 스폰서인 경우

최근 종교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스폰서로 일반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매년 현금 수입에서 교회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영주권 신청인의 연봉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불 능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인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정식 고용인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재정 담당자 (CFO)의 편지로 세금보고서 없이도 이민청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 PERM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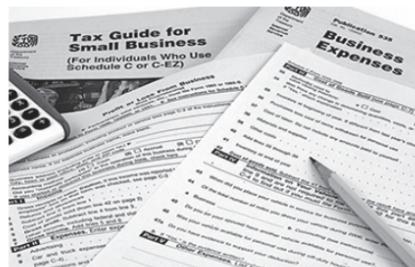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노동허가



서(Labor Certificate)의 승인 문제입니다. 흔히 PERM이라고 알려진 노동허가서 신청 과정은 스폰서가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외국을 고용하기 위한 이민 신청을 허가 받는 과정입니다. 노동청이 이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줄 경우에만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인은 이민청원서(I-140)와 이민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PERM신청 과정에서 감사(Audit)가 걸린 경우 노동부는 스폰서가 광고를 제대로 내고 인터뷰를 제대로 해서 이민신청인 대신에 미국 내에서 고용인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노동허가서(L/C)가 거부되고 이민 신청을 시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잘 고려한 다음 취업이민신청을 시작하기를 권고드립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1. 풍부한 실무 경험
2. 정확한 회계 업무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 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